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장, 비 가리개 및 안전 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1항).
-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(안 제44조제2항 신설 및 제72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1.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

- 안 제44조제2항은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 제외)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, 「유통산업발전법」상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은 특별 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임(제8조).¹⁾

1) 유통산업발전법

제8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~ ⑦ (생략)

- 그런데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‘시장’에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도 포함되나 (제7조),²⁾ 전통시장법상 ‘시장’은 행정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어서,³⁾ 안 제44조제2항과 같이 규정할 경우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.
- 따라서 안 제44조제2항은 ‘시장·군수·구청장’이라는 기존의 약칭을 사용하는 대신, 「유통산업발전법」처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44조(대규모점포의 등록) ① (생 략) ② <u>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</u> 은 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	제44조(대규모점포의 등록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<u>특별자치시장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은</u> 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2) 유통산업발전법

제7조(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)는 미리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~ 8. (생 략)

② (생 략)

3) 전통시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통시장”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·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.

가. ~ 다. (생 략)

2. 시행일

- 안 부칙 제1조는 개정 법률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,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,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안 부칙 제1조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당시 같은 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예정이었음을 고려한 것임.

- 그러나 2026년 6월 17일은 이미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안 제72조 제1항은 안 제44조제2항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 시행일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, 안 제44조제2항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3. 적용례

-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, 그 벌칙 적용에 있어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이 법 시행 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처럼 바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개정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먼저 한 후 그 시정명령 위반 시에 비로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임.

그런데 안 제72조제1항은 안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어서,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안 제72조제1항이 적용될 시정명령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, 안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4. 기 타

-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윤 상 열)